

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
적합성평가 표시 위반시 전파법 제 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제58조의2(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)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적합인증, 적합등록, 잠정인증을 받아야 한다.
⑥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·대여하거나 판매·대여할 목적으로 진열(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)·보관·운송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 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.

제58조의4(적합성평가의 취소 등)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적합성 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, 시정, 수거, 철거, 파기 또는 생산중지, 수입중지, 판매중지,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2.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
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
2. 제 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
문의 |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(www.rra.go.kr)
Tel. 031-644-7530~4 (민원실)



미래창조과학부

방송통신기자재 · 전기용품

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?

적합성평가 확인으로 안전한 그린 IT 세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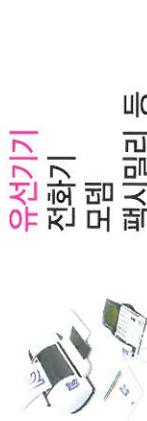


RRA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
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

방송통신기자재 · 전기용품 적합성평가란?

유선 · 무선 · 정보기기 · 전기용품에 대해
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.

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은 무엇인가요?



유선기기
전화기
모뎀
팩시밀리 등



무선기기
휴대폰
무선LAN
무선조정용 완구 등



정보기기
PC
프린터
MP3 등



전기기기
세탁기
전자렌지
청소기 등



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나요?

- 불법 제품과 달리 안전합니다.
- 화재, 감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- 전자파 영향에 대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.
- 주변기기에 간섭 및 오작동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.

안전!
안심!



안전



불량

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
제품에 인증마크가 부착되어
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.

- ※ 방송통신기자재를 구입할 때
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인지
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제 품 명 : 00000
 모 델 명 : 000-000
 제조년월 : 0000년 00월
 제 조 자 : 00전자(주)
 제조국가 : 대한민국

MSIP-CRM-000-XXXXXXXXXXXXXXX

적합성평가 표시가 없는 제품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?

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
국립전파연구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국민신문고

www.epeople.go.kr

※ 국립전파연구원

www.rra.go.kr

Tel. 031-644-7520~6

신고

